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연월일 : 2003. 10. .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현실정에 맞게 인하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도시철도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4퍼센트 복리에서 연 2.5퍼센트 복리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철도법 제12조,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9.19~10.9)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등,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연4퍼센트”를 “연2.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생략)</p> <p>②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4퍼센트 복리로 한다.</p>	<p>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 2.5퍼센트-----</p>

## 관 계 법 령

### □ 도시철도법

第12條 (都市鐵道債券의 발행)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1.5.31, 1995.12.29>

③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④都市鐵道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 年度 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0.12.31]

###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①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9.5.10>

②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전문개정 1991.7.25]

# 심 사 보 고 서

2003년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3년 10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1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 11. 7)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김 기 갑)

### 1. 제안이유

-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현실정에 맞게 인하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도시철도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4퍼센트 복리에서 연 2.5퍼센트 복리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충 일)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앞의 내용과 같음.

#### 2.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철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을 시중금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임.
- 도시철도공채는 채권의 특성상 저축성이 아닌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개인·법인으로부터 각종 인·허가시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Ⅳ. 토 론 요 지 : 생 략

Ⅴ.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